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조합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1호	1,200
나. 조합이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2	2,000
다. 조합이 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101조 제2항	600
라.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45조의3제2항(법 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1호의3	1,000
마. 조합이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2호	1,200
바.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3호	2,000
사. 조합이 법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3호의2	1,200
아.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3조의4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4호	1,200
자.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4호의2	2,000
차.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5호	1,200
카. 조합이 법 제86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	법 제101조	600

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·관리하지 않거나 채권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6호	
타. 법인인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7호	2,000
파. 법인이 아닌 자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101조 제1항제7호	1,000 다만, 임 직원의 경 우 에 는 400만원으 로 한다.